

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!

- 특허청,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(10.10) -
- 지식재산권 분쟁에 처한 중소·중견기업에 신속한 분쟁대응 지원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10.10.(화)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·변호사 선임 비용 등*을 대출받을 수 있는 ‘분쟁비용 즉시대출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대리인 비용, 감정평가 비용, 손해배상금, 인지액, 송달료, 번역료 등

【 지식재산공제 】

중소·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·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.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5천개 기업이 가입해 약 1,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.

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10.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·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.

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, 재심, 심결 취소소송, 지식재산권 침해소송, 기술탈취·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,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.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.

또한,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.

지식재산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,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 또는 지식재산공제 누리집(ipmas.or.kr)을 통해 가능하다.

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이번 즉시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·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”며

“앞으로도 지식재산공제의 상품성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지식재산공제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1. 지식재산공제 개요 및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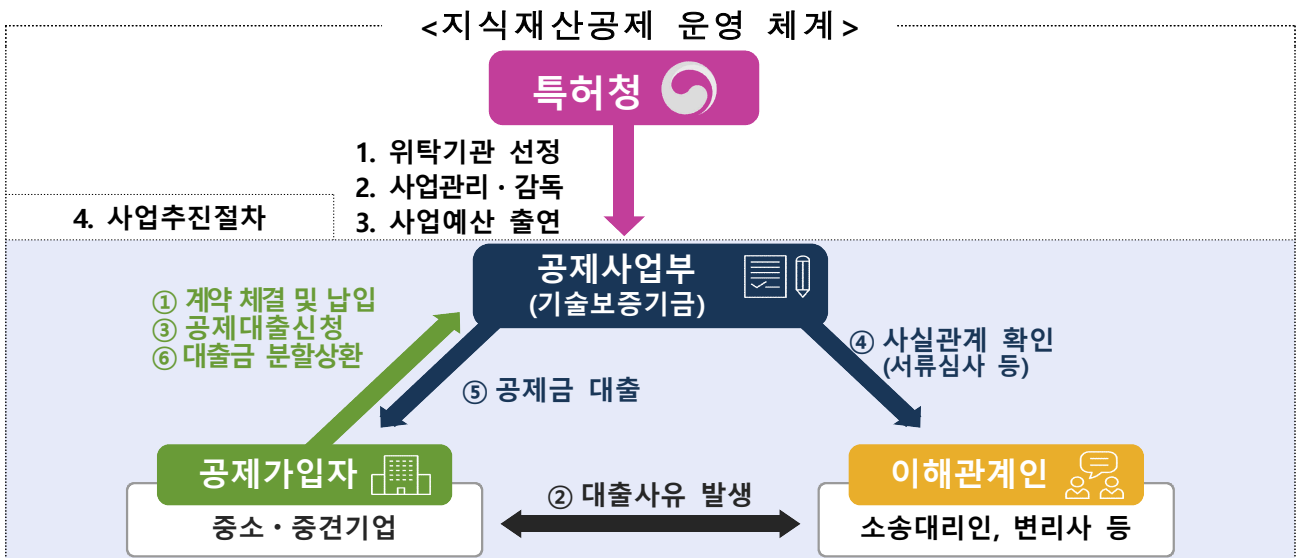
2. 즉시대출 제도 도입 개요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	책임자	과 장	윤기웅 (042-481-5258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진 (042-481-8658)
			주무관	서규원 (042-481-1658)

붙임1

지식재산공제 개요 및 현황

- (사업내용) 가입기업이 적립한 부금으로 국내·외 지식재산권 분쟁, 출원 등 발생 시 발생 비용을 대출을 통해 상호 부조
- (부금 적립) 가입 시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형태*로 부금을 적립하고,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
 - * 부금월액(30~1,000만원)·부금총액(15백만원~5억원), 기업 당 3건까지 가입 가능
- (대출 상품) 가입 6개월 후부터 적립부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지식재산비용*대출 및 부금액의 90%이내에서 경영자금대출 가능
 - * 국내·외 출원,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, 지식재산 이전·사업화 비용 등



<지식재산공제 가입 및 부금 적립 현황>

구 분	'19년(8월말~)	'20년	'21년	'22년	'23년(~8월말)	누 계
가 입 건 수(건)*	1,409	3,797	3,737	3,915	2,645	15,503
가 입 기 업(개)	1,409	3,753	3,575	3,794	2,450	14,981
누적부금액(억원)	27	331	907	1,461	1,834	1,834

* 기업 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함에 따라 다계좌 계약 건수 포함

□ 개요

- 부금을 6회차(6개월)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지식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 비용*대출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 - * 대리인 비용, 감정평가 비용, 손해배상금, 인지액, 송달료, 번역료 등

□ 세부내용

- 대출사유를 지식재산분쟁으로 제한*하고 대출한도를 부금납입 총액의 3배 이내로 설정
 - *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 비용 등은 부금 6회 이상 납입 시 대출 가능
-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 등*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하여 지원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
 - * 기술탈취·영업비밀 관련 소송대응, 특허침해 회피를 위한 지식재산 거래 등

<기존 지식재산 비용대출과 분쟁비용 즉시대출 비교>

구 분	지식재산 비용대출	분쟁비용 즉시대출
대출자격	부금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	부금가입 후 6개월 이내
대출사유	지식재산분쟁, 국내·외 출원, 지식재산 사업화 등	지식재산분쟁 (가입 전 6개월 이내 발생 포함)
대출한도	부금납입액의 5배 이내	부금납입액의 3배 이내

□ 기대효과

- 지식재산분쟁 발생 시 대출을 신속히 지원하여 공제가입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 완화